조선봉건왕조에서 제정실시된 품계제도의 특징

리 히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경제제도가 변하고 계급들의 정치 투쟁의 내용이 변하면 법도 변하지 않을수 없습니다.》(《김일성전집》제21권 483폐지)

우리 나라의 마지막 봉건국가인 조선봉 건왕조에서 제정되고 실시된 관료품계제 도의 특징을 밝히는것은 지난날 우리 나라 봉건국가들의 품계제도변천과정을 연 구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봉건왕조의 품계제도의 특징은 무 엇보다도먼저 고려시기의 품계제도를 계 승한 토대우에서 제정되였다는데 있다.

고려의 품계제도를 보면 고구려를 비롯 한 세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 품계의 상 층과 하층의 두 마디에 의하여 세개의 관 료집단으로 나뉘여져있었다.

고려는 제1관료군을 재추관료층으로, 제 2관료군을 참상관층, 제3관료군을 참외관 층(또는 참하관층)으로 구분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자들이 당상관충, 참상관충, 참하관충으로 나눈것은 고려의 품계3충법을 계승한것이다.

고려에서는 2품(정3품관 일부 포함)이상 의 관료들로써 제1관료군 재추관료집단을 형성하였는데 조선봉건왕조에서도 2품이 상의 관료들과 정3품 통정대부이상의 품 계를 가진자들로 제1관료군 즉 당상관의 관 료집단을 이루었다.

한편 고려의 제2판료군인 참상관층은 정 3품의 일부와 그 이하 6품까지로 한정하 였고 7품이하 9품까지의 제3판료군을 참 외관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봉건왕 조의 관료군 편성원칙과 기본상 일치되여 있었다.

결국 두개의 마디에 의하여 세개의 판 료집단이 신분적으로 갈라진 조선봉건왕 조의 품계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따른것이 라고 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의 품계제도의 특징은 다음으로 고려의 품계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강화된것이다.

15세기에 제정된 품계의 종류를 보면 정 직계, 잡직계, 토관계가 있었고 그것들은 다 시 동반계. 서반계로 나뉘어져있었다.

동반계는 다시 조판계, 종친계, 의빈계로 구분되였다. 정직계, 잡직계, 토관계 등의 이름을 가진 품계는 그 종류마다 다 여러개의 등급이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의 품계는 문반과 무반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적으 로는 동일하게 되여있었다.

《경국대전》의 리전에 의하면 동반관료들의 벼슬등급은 정1품으로부터 종9품까지의 18개의 등급으로 나뉘여지고 다시 종6품이상은 상, 하 두마디를 더 설정하여 모두 30개 층으로 되여있었다.(여기에서 관료벼슬등급을 품이라고 한다.)

매 품에는 《정》, 《종》의 두개 층이 있어 품이 모두 18개이고 6품이상을 다시 상, 하 두 층으로 나누어서 그 매개의 층을 《계》 라고 하였다.

매 계에 대광보국숭록대부, 보국숭록대부(정1품), 성록대부, 숭정대부(종1품), 정헌대부, 자헌대부(정2품), 가의대부, 가선대부(종2품), 통정대부, 통훈대부(정3품) 등의 이름을 붙이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정직의 서반계에는 15품 22계, 잡직계에는 8품 10계, 토관계에는 문무를 포함하여 각기 10품 10계, 종친계에는 11품 22계, 의빈계에는 6품 12계가 있었다.

이에 비하여 고려시기에는 문무의 산계 가 기본으로 되여있었고 조선봉건왕조와 같 이 품계의 종류가 복잡하지 않았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고려시기와 반대 로 관직보다 품계를 우선시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이 관료의 신 분을 나타내는 징표를 관직보다 품계를 우 선시하였기때문에 관료질서면에서 해당한 관료신분에 따라 품계의 종류도 세분화하 였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종친과 의 빈 그리고 지방의 토착량반들을 위하여 종 친부, 의빈부, 토관청을 설치하고 종친계, 의빈계, 토관계 등의 벼슬품계를 따로 제 정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이 지 방의 토착량반들을 비롯하여 벼슬길이 막 혀있던 종친, 의빈들에게까지 제한된 범위 에서나마 벼슬길을 열어주어 벼슬자리를 차 지하려는 그들의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 시키려는 목적에서 취하여진 조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품계제도가 고려에 비하여 세분화되고 강화된 근거는 관료품계 적용에서 차별이 더욱 심화된데서도 찾아 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의 동반계는 주로 문과과 거에 합격한 특권층의 자손들에게만 적용 되고 잡직은 여기에서 배제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잡직으로서 특이하 게 동반벼슬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한 정직보다 한등 급 낮추어 적용하였다.

이것은 조선봉건왕조의 동반계 적용범 위보다 고려의 문산계 적용범위가 형식상 넓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에서는 처음부터 잡 직계가 동반품계와 별도로 제정되여있었 으므로 잡직관들이 동반벼슬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정직의 동반계는 감히 바랄수 없 게 법적으로 제한하였다.

서반벼슬등급의 적용도 조선봉건왕조와 고려는 차이가 있었다. 고려시기의 무산계는 명색뿐이고 사실 상 무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하층 군인들에게만 일부 적용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원칙적으로 서반벼슬등 급을 무관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면서도 문 관들에게도 주었다.

문관으로서 오위장으로 임명된자들과 체 아군직을 받은자들이 서반벼슬의 품계를 받 았던 사실이 그 실례의 하나이다.

《대전회통》의 오위조에 의하면 문판으로서 일정한 직무는 있으나 그에 해당한 록봉이 없는자들에게 록봉을 주기 위하여 오위의 무관벼슬인 상호군, 대호군, 호군, 부호군, 사직, 부사직, 사과, 부사과, 부장, 사정, 부사정, 사맹, 부사맹, 사용, 부사용 등의 체아군직을 주고 각기 거기에 해당한 서반벼슬품계를 주었다.

우의 체아군직에는 무관들과 잡직벼슬 아치들도 포함되여있었으나 문관들의 수 가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이것은 서반품계의 적용범위가 고려시기에 비하여 형식상으로도 넓었고 문반들이 서반직에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침투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봉건왕조의 품계제도가 고려시기에 비하여 세분화되였다고 보는 근거는 관료 품계구분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의 계충적인 품계구분도 역 시 고려의 법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상충 과 하층으로 나뉘여져있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와 고려의 품계구분을 보면 품계 제1판료군과 제2판료군의 한계에서 원칙적인 차이가 있었다.

고려시기에는 제1관료군의 한계를 벼슬 자리로 나타내였으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는 벼슬등급으로 나타내였다. 다시말하여 고려는 제1관료군의 최종 한계점을 추밀 원관직으로 나타내였고 조선봉건왕조는 제 1관료군아래 한계점을 정3품 통정대부까 지로 규정하였다. 11세기 후반기(문종통치시기)에 제정실 시된 관제에 의하면 중서문하성의 종1품 관들인 문하시중과 중서령을 비롯한 다섯 개의 관직을 재신직으로 하고 중추원의 종 2품관들인 판사를 비롯하여 다섯개의 관 직 그리고 3품직 두개를 합쳐서 《재5, 추 7》의 제1관료군을 편성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종2품이상의 품 계를 가진자들과 거기에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가진 10여명으로서 당상관 층 곧 제1관료군을 형성하였다.

고려에서는 추밀판직을 차지한자들과 이여의 벼슬을 가르는 한계를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재추로 되는 벼슬품계에는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당상관과 당하관 즉 제1관료군과 제2관료군을 가르 는 정3품 상계와 하계사이에 엄격한 한계 를 보여주는 준직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통훈대부의 품계를 가진자들 은 반드시 준직을 거쳐야만 정3품통정대 부의 품계와 그에 대등한 벼슬자리를 차 지할수 있는 자격을 얻을수 있었다.

준직에 해당한 관직으로는 종부시, 내자시, 내섬시, 사도시, 봉상시, 례빈시, 사복시, 군기시, 군자감, 사재감, 관상감, 선공감 등시, 감자가 덧붙은 관료기관의 정3품 관직인 정, 오위의 상호군, 훈련원의 정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직을 처음으로 받는 경우에 그것을 준직으로 인정하였다. 이밖에 동래부사, 회령부사 등 외관직도 있었다.

당하관이 당상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비좁고 어렵기때문에 당하 최상계인 정3품 통훈대부를 가리켜 《계궁》 또는 《자궁》이라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당상관과 당하관들의 관료적지위를 유지하는 형식에서도 고려 시기와 차이가 있었다.

고려를 비롯한 그 이전에 존재한 봉건 국가들은 제1관료군의 관료적지위를 관료 평의기구를 통하여 실현하였다.

고려의 제1관료집단도 주로는 평의기구를 리용하여 저들의 리익을 집단적으로 대변하였고 또 그것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관료적지위를 고수할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제1관료 군의 팽창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으로 관료적지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고려시기에는 무반들을 제1관료군 즉 재추관료집단에 망라시킨 전례가 거의나 없었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형식상 무 관들이 당상관대렬에 들어오는것을 제한하 는 제도적인 장애는 없었다고 볼수 있다.

무관들이 당상관으로 되는데 대하여 크 게 문제시하지 않은것은 동서반관료들이 당 상관품계에 오르는 길이 제각기 따로 있 었기때문이였다.

이처럼 서반벼슬등급이 따로 설정되여 있었으므로 문관에 비하여 《지체》가 떨어 지는 서반품계에 따라 무관들이 당상관대 렬에 끼여드는 경우에도 그것이 곧 문관 들의 특권적지위를 유지하는데 저촉된다 고 보지 않았다.

조선봉건왕조의 서반품계는 정1품부터 정2품까지는 문반계와 같았고 정3 품 절 충장군 하나의 계가 서반계의 당상관 품계로 되여있었다. 다시말하여 서반품계로 는 정, 종1품과 정, 종 2품에 오를수 없었고 그 품계는 다 문관들만 차지할수 있었다. 때문에 무관들은 당상관이 되여도 정3품 절충장군이상은 바랄수가 없었다.

그러나 고려시기에는 문신이든 무신이든 하나의 품계로 상급품계로 올라갈수가 있었으므로 무신들이 제1관료군에 들어오는것이 곧 문신들의 특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되였던것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당하관들의 관료적 지위를 유지하는 측면도 고려시기와는 차 이점이 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품계하층을 정3 품 통훈대부이하로 설정하고 그것을 당하 관이라고 하였으며 당하관을 다시 참상관 층과 참하관층으로 나누어 제2관료군과 제 3관료군을 편성하였다.

즉 동반품계는 정3품 통훈대부로부터 종 6품 선교랑까지, 서반품계는 정3품 어모 장군으로부터 종6품 병절교위까지를 참 상관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해당 기구 내의 중요업무토의에 참여할수 있는 자격 을 부여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품계제도에서 품계의 아 래층인 당하관을 다시 참상, 참하로 가르 는 계선이 정직계에만 있고 잡직계에는 없 었다.

잡직계에도 6품이 있었으나 정직보다 한 등급 낮은것으로 인정되여 결국 품계의 당 하관층은 참상관층과 참하관층으로 다시 갈 라졌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직의 동서 반품계에 따르는것이였다.

조선봉건왕조의 참하관층은 동반품계의 정7품 무공랑으로부터 종9품 장사랑까지 로, 서반품계는 정7품 적순부위로부터 종 9품 전력부위까지로 규정하고 이들로써 제 3관료군을 이루었다.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품계의 하층에도 일정한 계선을 설정하였다. 즉 참하7품으로부터 참상 6품으로 승급하려는 경우에 이에 따르는 제한조치를 실시하였다.

조선봉건왕조의 품계제도는 소수의 관료통치배들이 저들의 특권을 독점할수 있 도록 계급신분관계에 기초하여 전체 관료 군을 품계적으로 재편성한 반동적이며 반 인민적인 제도였다.